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795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4. 4. 3.
4. 회부일자 : 2023. 4. 8.

## II. 제안이유

1.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2.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 폐장에 따른 명칭 및 주소 삭제
3. 교육시설관리본부 소재지 및 업무 명칭 현행화
4. 기타 상위법령 근거 명확화와 근거 조항 폐지로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규정 및 관용적 표현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수정

## III. 주요내용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 령)」 제7조(한시기구 설치·운영)를 동 조례의 목적 조항에 근거 규정으로 반영함(안 제1조 개정)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과·담당관과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를 “과·담당관” 으로 수정(안 제2조 개정)
  3.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해 부교육감 밑에 유보통합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기존 교육행정국 소속 한시기구인 청사이전 추진단을 신설된 한시기구의 설치 조항에 반영함(안 제2조의2 신설)
  4.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 명칭 및 주소 삭제(안 제20조 및 [별표 2])
  5. 교육시설관리본부 소재지 및 업무 명칭 현행화를 위한 정비(안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2호 개정)
  6. 유보통합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함(부칙)

#### IV.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별첨 6]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제2조, 제20조, 제39조, 제41조

##### 2. 예산조치

가.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3. 협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4. 기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입법예고(2024.3.13.~ 2024.3.27.) 결과: 의견없음

다. 규제심사: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별첨 3]

마. 성별영향평가: 제외통보 확인서 [별첨 4]

바.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별첨 5]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795호로 제출되어 2023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학생교육원 야영교육장 폐지에 따른 명칭 및 주소 삭제, 교육시설관리본부 소재지 및 업무 명칭 변경, 조례상 위법령 조항 명확화 등의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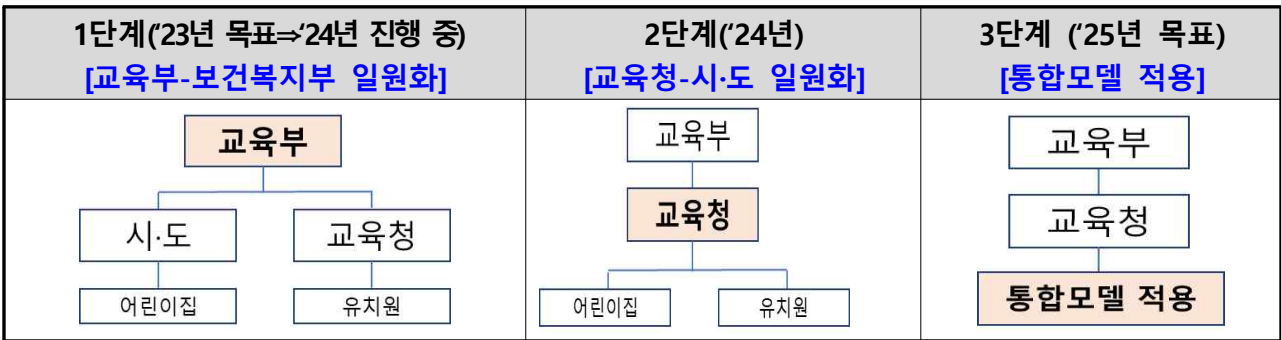
가. 한시기구(유보통합추진단) 설치 관련(안 제2조, 안 제2조2, 안 부칙<제8692호> 제2조, 안 부칙 제2조)

- 안 제2조의2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신설(안 제2조의2제1항)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이전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3년 5월, 교육행정국에 신설된 ‘청사이전추진단(안 제2조의2제2항)’ 등의 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유보통합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sup>1)</sup>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2023년 1월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범부처 조직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습니다.

1)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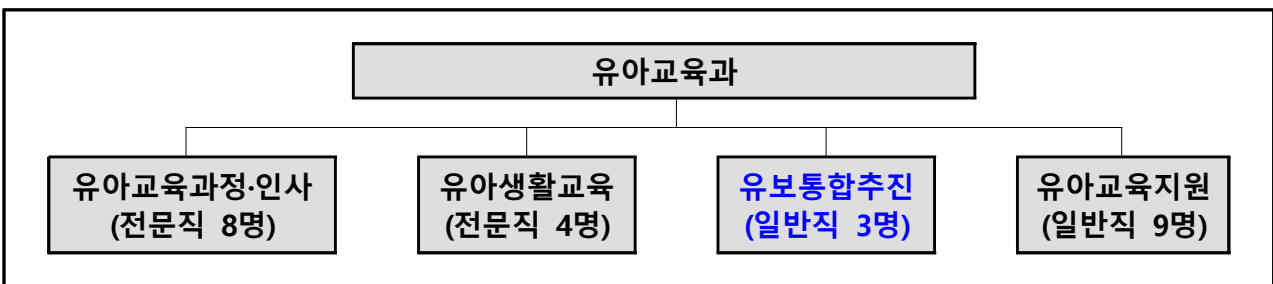
-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부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2025년에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모델 적용을 목표로, 2023년에 중앙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작업 등이 이루어졌고, 2024년에는 지방 차원에서 교육청 및 시도 단체 간의 일원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표-1] 유보통합 추진 단계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정책국 내 유아교육과에 유보통합 전담팀을 신설하여 3명(교행5급 1명 교행6급 2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는 경기도교육청 및 인천교육청 등 타 수도권 교육청에 비해 관련 정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sup>2)</sup>.

[표-2] 현행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조직 및 인력



2)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국정감사(교육위원회)에서 유보통합 추진 기구 설립 및 인력 배치 문제와 관련한 지적을 받은바 있음(2023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23-25쪽, 2023년 10월 20일).

[표-3]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보통합 담당 인력 현황

구분	시도	2024.1.1. 현황					합계 (A)
		일반직			전문직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장학관	장학사	
1	경기	1	2	6	-	2	11
2	인천	-	1	5	1	3	10
3	대구	-	1	7	-	1	9
4	충남	-	-	6	1	2	9
5	부산	-	1	6	-	-	7
6	대전	-	-	6	-	-	6
7	전북	-	-	6	-	-	6
8	강원	-	1	5	-	-	6
9	울산	-	1	4	-	-	5
10	광주	-	1	3	-	-	4
11	전남	-	-	4	-	-	4
12	경북	-	-	3	-	-	3
13	서울	-	1	2	-	-	3
14	세종	-	1	2	-	-	3
15	경남	-	-	-	-	-	0
16	충북	-	-	-	-	-	0
17	제주	-	-	-	-	-	0

-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유보통합 관련 재정 및 조직구조 관련 업무, 교육정책국은 유보통합 관련 교육과정 편성 및 교원 양성 업무, 평생진로교육국은 급식 지원 및 통합 특수교육과정 마련 업무, 교육행정국은 어린이집 설립인가 및 공유재산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바, 현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청 모든 실·국에서 관련 사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처럼 현재 유보통합은 서울시교육청 전체 실·국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바, 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를 규정하는 안 제2조2제1항은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 유보통합 추진 본청 실·국별 추진 과제

실·국	부서	과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영유아보육 재정 이관 및 확보
	행정관리담당관	· 영유아보육 정원 이관, 유보통합에 따른 조직구조 개편
교육정책국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 유·보 업무처리 및 회계관리 시스템 통합
	유아교육과	· 통합 교육기관 모델 및 교육과정, 교원 자격·양성 체계 마련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 지원 격차 완화
	특수교육과	· 영유아 통합 특수교육과정 마련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 어린이집 설립·인가, 수급계획 수립
	교육재정과	· 어린이집 공유재산 이관
	교육시설안전과	· 노후 어린이집 시설 개선

○ 다음으로 안 부칙 제2조는 이와 같은 ‘유보통합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보 통합모델 적용시기를 고려한 것입니다.

-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시기구의 설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 위임사항<sup>3)</sup>으로 규정되어 있고, 안 제2조의2제1항에 유보통합추진단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바,

3)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략

유보통합추진단의 존속기간을 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하는 것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2조의2제2항 및 안 부칙<제8692호> 제2조는 동 조례 제9조제10호에 의해 이미 본청 교육행정국 내에 한시기구로 설치된 ‘청사이전추진단’ 관련 사항을 한시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안 제2조의2에 별도로 명시하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사이전추진단’ 존속기한을 명시한 부칙에서는 관련 조항명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2조는 한시기구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2조의2 신설에 따라 본문 중 ‘한시기구’ 를 삭제하고, 2012년에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여유기구’ 설치에 관한 조항이 폐지<sup>4)</sup>됨에 따라 ‘여유기구’ 용어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천마산야영교육장, 영월야영교육장) 명칭 및 주소 삭제(안 제20조 및 [별표 2])

- 안 제20조는 조항명과 본문 중 야외교육장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별표2’ 의 제명 및 내용 중 야외교육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천마산야영교육장은 1979년부터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 왔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야영장 내 건축물을 설치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2. 5. 24.] [대통령령 제23645. 2012.2.29., 전부개정]



하면서 당시 「건축법」에 의해 공사완료 이후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을 등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에 남양주시에 건축물 등재를 요청하였으나, 관할 남양주시는 소방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건축물 등재를 반려하였고,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에서 천마산야영장이 청소년 수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sup>5)</sup> 및 동법 시행령<sup>6)</sup>상 수련시설 안전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및 건축물대장의 등재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sup>7)</sup>.

[표-5] 천마산야영장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

구분	기준	실태
야영장 규모	100명 이상 야영지 2,000㎡ 필요	사용허가 토지면적 661㎡ (면적부족)
야영장 입지	이용의 편리성, 장애인편의시설 구축	급경사 목계단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어려움
체육 활동장	연면적 1,000㎡ 이상 실외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미존재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동 야영교육장 운영방안 재검토를 위한 TF 등을 구성하여 건축물대장 등재 및 수련시설 안전기준 등을 충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7) 감사원 정기감사 보고서(2020). 학생교육원 시설관리 및 수련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족시키려 하였으나, 군립공원 내 위치한 야영교육장 규모 및 입지 문제 등으로 남양주시 및 감사원 지적 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해당 야영장 시설물을 철거하고 야영교육장을 최종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8).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강원도 영월군에서 매입한 폐교 부지에 학생 수련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2018년, 영월야영교육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학생 숙박시설을 위한 카라반을 구입하는 등 영월야영교육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카라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련시설 건축기준에 미달하는 재료(난연재료)를 사용하였고, 또한 카라반을 건축물로 보지 않아 영월군에 카라반 설치에 대한 협의 및 사용승인 신청 등의 절차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9).

8)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2023.12.). 2024년 천마산야영교육장 철거 및 산림복구 계획.

9)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 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또한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사 완료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함.

\*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이와 같은 사항은 2020년에 시행된 감사원 기관 감사에서 모두 지적이 되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영월군과 협의하여 수련시설 기준에 부합되게 카라반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였으나, 감사원 및 영월군과의 협의 결과 현재 보유한 카라반(난연재마감) 활용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영월군이 기존 존치기한 만료 건물의 사용승인 연장에 대해서도 사용 불가 의견 등을 표명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결국 영월야영교육장의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sup>10)</sup>.

**[표-6] 영월야영교육장 교육 시설 구축 현황 및 폐지 결정 과정**

연번	시기	내용
1	2013. 2.	폐교 부지 및 건물 매입(24,133㎡) - 폐교활용 수련시설 확충 사업
2	2018. 9.	영월야영교육장 조성 계획 수립
3	2018. 12.	카라반 구매 발주
4	2019. 6.	영월야영교육장 기반 시설 준공
5	2019. 7.	카라반 설치
6	2020. 11~12.	감사원 기관 정기 감사 실시
7	2020. 12.	감사 결과 통보(주의 및 통보)
8	2021. 5.	영월야영교육장 운영 방안 제검토 TF 운영
9	2022. 6.~10.	영월야영교육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실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분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 ~ ⑤ 생략

10)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2024.1.).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영월야영교육장 용도 폐지 계획.

연번	시기	내용
10	2020. 6.	1차 감사원 방문 협의 - 차량 등록을 통한 카라반 시설 활용 방안 모색 (감사원, 불가 입장 표명)
11	2022. 6.	1차 영월군청 방문 협의 - 카라반이 건축물로 판단된다는 지자체 의견 재확인 (영월군, 원칙적으로 감사지적 이행이 필요하는 의견 표명)
12	2022. 12.	2차 감사원 방문 협의 - 교직원 연수 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성 모색 (감사원 불가, 입장 표명)
13	2023. 6.	2차 영월군청 방문 협의 - 영월야영교육장 내 존치기한 만료 건물 사용승인 연장 불가 의견 표명 - 카라반 포함 모든 시설물이 건축법상 적법해야 사용승인 가능
14	2023. 12.	영월야영교육장 교육 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교육운영 중단 및 용도 폐지 의견 제시
15	2024. 2.	영월야영교육장 교육감 용도 폐지 계획 승인

- 따라서 현재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천마산야영교육장 및 영월야영교육장)의 시설은 「건축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규정된 절차 및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야외교육장 입지 및 시설물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감사원 및 해당 자치단체의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향후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천마산야영교육장 및 영월야영교육장) 폐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폐지 시기와 관련하여 야외교육장(천마산야영교육장 및 영월야영교육장) 폐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천마산야영교육장은 2021년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로부터 천마산야영교육장 부지 사용 불허 및 원상 반환 통보를 받았고<sup>11)</sup>,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에 시설 철거 및 산림복구 예산을 편성하여<sup>12)</sup> 2024년에 관련 사업을

11)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2021.10.20.). 공유재산 사용허라 불허 및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반환 통보.

12)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526,570천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편 영월야영교육장의 경우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카라반 및 기타 시설물(화장실, 컨테이너) 등을 매각할 계획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향후 카라반 등의 시설물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물 처리 관련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이 현재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천마산야영교육장 및 영월야영교육장)은 향후 폐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두 야영교육장은 아직 폐지와 관련된 시설물 처리 및 부지 복구 등에 대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동 개정조례안 제20조는 및 ‘별표2’ 에서 야외교육장(천마산야영교육장 및 영월야영교육장)을 삭제하는 것은 향후 폐지 관련 사업이 완료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사무(안 제39조제2항, 안 제41조제2호)

- 안 제39조제2항은 교육시설관리본부의 건물군 분리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41조제2호는 ‘민간위탁 시설 용역 관리’ 를 ‘시설관리 용역 지원’ 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 먼저 안 제39조제2항은 교육시설관리본부가 2019년에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봉사관’ 으로 이전한 후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와 ‘교육시설관리본부’ 가 있는 건물을 분리하여 건물번호를 신청하였고, 이에 2020년에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은 받았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sup>13)</sup>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시설관리본부의 건물동 분리로 인해 새로운 주소를 부여받은 시기는 2020년 1월 10일로, 이 이후에 동 조례의 개정은 3번이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타 기관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이와 유사한 사항들을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41조제2호는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의해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에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였고, 이에 학교시설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 조례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제7조부터 제8조까지’로 변경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sup>14)</sup>’로 변경한 것은 동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위

13) 성북구청(2020.1.10.). 건물번호 부여 처리 알림.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법령의 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제7조부터 제8조까지’로 변경하는 것은 유보통합추진단 등 한시기구 설치 등을 규정한 안 제2조의2 조항의 근거가 되는 동 규정 제7조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 외 개정 사항은 용어 수정인바, 안 제1조 개정에도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2180-8270)
----------	----------------	-------	----------------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 ⑥ 생략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생략

제3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 ④ 생략